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2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최은석・이인선・신성범

송언석 • 이종욱 • 고동진

서일준 · 서지영 · 박충권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u>\odo</u>)
<u> <신 설></u>	④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
	2항에 따라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
	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
	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u>추징한다.</u>